2021년 제4차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2021년 12월

행정**국** (서울기록원)

2021년 제4차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1. 12. 16.(목) 14:00~16:20

◆ 장 소 : 온라인 영상회의

◆ 참 석: 7명

- 위촉위원(4): 이상미(위원장), 김성순, 김희란, 박종연

- 내부위원(2): 김은실(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장), 원종관(보존서비스과장)

※ 김필래 위원(운영지원과장) 불참

- 배 석 자(1): 서수런(간사)

◆ 안 건

〈안건1〉 감사기록의 공개범위 〈안건2〉 영상기록의 공개범위

◆ 회의결과

〈안건1〉가결

- 부분공개
 - 비공개대상정보: 개인의 인적사항, 진술서·경위서·확인서,

징계서류 중 비위 상세내용

- 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안건2〉가결

- 홍보영상: 공개
- 방송 스크랩: 비공개
- 시정 기록영상, (방송,홍보) 제작과정 영상, 축제 기록영상 : 부분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사인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 공연 영상
 - 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제3호(저작권)
- 기타 의견
 - 영상자료 선별 및 공개,서비스 관련 정책 및 지침 마련 필요
 - 시정,축제 등 기록영상의 경우 홍보영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

□ 주요 발언 내용

▶ 개회

〈위원장〉

- 12월에는 같이 대면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상황이 되어 안타깝지만 그래도 얼굴 뵙게 되어서 기쁨.
- 지금부터 2021년 제4차 기록물공개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음. 오늘은 서울기록원 내부위원인 김필래 운영지원과장님이 참석을 못 하셔서, 전체 7명 위원 중에서 6명 위원이 참석하셔서 회의가 개회가 됨.
- 안건 및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에 대해 간사의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의결사항을 작성한 의결서에 대해 위원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음. 회의 종료후 이메일을 통해 심의의결서의 위원별 서명을 받도록 하겠음

▶ 〈안건 1: 감사기록의 공개범위〉심의

〈간사〉

- O **안건 설명** ※ 붙임 안건 참고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음.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다름
 - ○○○ 위원은 전반적인 인적사항과, 진술서 및 조사서, 경위서 등 조사내용, 범죄사실, 비위 상세내용을 비공개 대상정보로,
 - ○○○ 위원은 기록원 의견과 거의 같은 의견, ○○○ 위원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인적사항 정도로 제한하는 의견 주셨음.
 - 그밖의 의견으로 ○○○ 위원은 감사 기록의 공개여부는 사안별로

다양한 의견이 나타날 수 있기에 개인정보 등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 위원은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위원 성명,직위 등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능하다는 의견 주셨음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발언해주시길 바람
- 30년 경과하여서 원칙적으로 공개이지만 개인 사생활 정보는 비공개해야 할 것인데, 공개가능 정보의 범위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보임
- 징계요구의견, 처분결과 근거조항, 징계위원회 성명·직급 등을 공개해도 된다는 기록원 검토결과가 있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비공개정보에 대한 것부터 먼저 좀 얘기를 들어보았으면 함

〈위원〉

○ 첨부로 보내주신 기록들을 보다보니, 이름과 인적사항을 빼더라도 장소, 사건, 시간등을 통해 사건이 유추 가능한 경우들이 있었음. 특히 옛날 진술조서 같은 것을 보다보니 사안별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음. 무조건 공개하는 것보다 요청이 들어오면 공개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함.

〈위원〉

○ 감사결과처리부, 비위공무원처분대장 같은 기록 말씀이신지 〈위원〉

○ 그외에도 진술조서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러함. 진술조서나, 조사서, 경위서 같은 부분에 그 감사대상자 외에도 주변 동료나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도 함

〈위원〉

- 진술경위서는 기록원 검토의견 자체가 전체적으로 비공개임
- 감사결과처리부라던가 비위공무원처리대장, 여론 및 민워사항처리부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공개, 비공개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맞으신지

〈위원〉

○ 네 맞습니다.

〈위원〉

- 이번에 시의회에서도 특정 위원회의 위원명단에 대한 공개여부를 질의하신 위원이 있었음. 징계위원회나 감사위원회의 위원명단 자체는 임기 종료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근거조항이 있는 것인지.
-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위원회 위원 성명, 직위 정보는 30년 동안 계속 비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간사〉

○ 법령에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나, 비공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다만, 이번 안건 대상 기록은 생산 30년이 경과했으므로 30년 공개 원칙에 의해 비공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위원〉

○ 3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감사 등이 종결된 경우에는 공개 가능한지, 공개시점은 법령에 명시가 안 되어있는지.

〈간사〉

○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위원회 명단 같은 경우,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산권과 직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명단들은 다 공개를 하고 있음. 그래서 징계위원회나 감사위원회도 관련 규정에 공개시점이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했음

〈위원〉

○ 끝나면 공개해도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많이들 그렇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징계위원회는 잘 모르겠음.

〈위원〉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200개 이상의 위원회도 기본적으로는 거의 다 공개를 하고 있음.

〈위원〉

○ 거의 다 공개하고 있는데, 징계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하였음. 법상으로는 현재 30년 이전의 것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인지

〈위원〉

○ 30년이라고 명시되어있지는 않고 비공개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음

- 기록원에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다소 조금 비공개가 많아 보임. 실제 소송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공개가 될 법한 것들도 꽤 있음. 근데 지금 일일이 다 구분해서 정하는 것보다 지금은 이정도로 정리하고 추가 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사안에 따라서 다시 심의해서 대응하는게 적절하다고 봄.
- 더 이상 미리 구분하는 것은 실무상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저도 기록원과 같은 의견이기는 한데, 징계위원회 위원 성명,직위의 경우 비공개인 것인지.
-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해 공개의견이라면 다른 의견은 없음

〈위원〉

○ 이미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임

〈위원장〉

○ 대부분은 현재 기록원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이신데, ○○○ 위원님이 감사결과처리부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자라는 의견을 주셔서 추가로 논의가 필요해보임

〈간사〉

○ 처분대장의 경우 근무기간,학력,연령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비공개 되어야 하지만, 비위내용은 간략하게 요약 기술되어 있으므로 공개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상정했는데 여기에 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위원〉

○ 원안으로 가결하면 될 것임. 다만, 이 안건에 부기사항으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넣어줬으면 함. ○○○ 위원 말씀처럼 공개범위를 좀 확대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의견임.

〈위원장〉

- 네. 그러면 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가결로 의결하면 될지(일동 동의)
-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가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음.

▶ 〈안건 2: 영상기록의 공개 범위〉심의

〈간사〉

- O **안건 설명** ※ 붙임 안건 참고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보고
 - 초상권, 저작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통 의견
 - 제작 과정중의 영상이나 방송스크랩은 공개 불가능하다는 의견
 - 시민이나 실무공무원이 포함된 경우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름. ○○○ 위원은 고위직급자 뿐 아니라 실무공무원의 모습,음성 등은 전체 공개 가능하다는 의견
 - 그밖의 의견으로 ○○○ 위원은 공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별이 필요하며 선별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위원〉

○ 옛날 TV 방송 영상에서 개인들 특정할 수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전부 다 허락을 받고 내보내는 것인지. 요즘은 개인정보 동의를 거치곤 하지만 과거엔 그러지 않았는데, 만약 초상권 침해 등으로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함. 개인의 모습이 상세히 촬영된 부분도 있는데, 20년정도 경과한 영상의 경우 전부 다 가려야 하는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됨. 일단은 기록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한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함.

〈위원〉

시정기록 영상과 축제기록 영상의 경우, 방송이나 다른 행사 등을 통해 한번이라도 공개 된 적이 있는 영상인 것인지 궁금함

〈간사〉

○ 다른 형태로 가공이 되어 TBS나 다른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을

수 있고 이 자체가 그대로 나가진 않았을 것으로 보임

〈위원〉

- 기본적으로 시정 기록 영상의 경우, 홍보관련 부서에서 기관장의 주요일정을 함께 하며 영상을 촬영하고 있음. 그런 영상은 일정 부분 편집하여 방송사에 배포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방송되었는지 여부는 지금 확인하기 어려움
- 방송사에서는 유튜브에 메이킹필름 같은 것들을 잘라서 공개를 하곤 하는데,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생산한 영상의 경우 조금 더 공개범위가 넓지 않을까하는 생각됨. 타 방송국 뉴스 영상, 시장 인터뷰 영상 등은 다를 수 있겠지만, 시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의 경우에는 준비과정의 영상이 모두 비공개여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음.

- 관련 사례로 적어주신 서울사진아카이브와 CCTV영상, 또는 화재동영상 파일에서 구별되는 지점은 찍히는 당시에 향후 공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었느냐에 있다고 봄. 서울사진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시정 공보사진이기 때문에 일단 공개를 하고 혹시나 누가 이의제기를 해오면 비공개로 돌린다는 정책으로 파악이 되고, CCTV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공개인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됨. 요즘은 인터뷰할 때도 활용과 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고 찍지만, 과거에는 그정도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 시점에서 지금처럼 물어본다면 싫다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서울사진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시정 공보사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도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시정 기록영상 및 축제기록영상도 이와 같게 봐야할 것으로 보임.
- 찍히는 사람 입장에서 향후 사용될 지를 예측하고 있었던건지, 사용될지 아예 예측을 못하고 있었던건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생각하면 될 것임. 그래서 시정 기록영상과 축제 기록영상을

- 이런식으로 다 비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봄.
- 제작과정 영상같은 경우에는 영상내의 인물이 공인이면 그활동자체가 공적활동이므로 공개를 해도 무방해 보이지만,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공적활동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공개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함. 초상권 관점만 보았을 때는, 찍히는 시점에서 이것이 공개될 수 있을까를 예상했냐 여부를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서 공개해도 되지 않나 생각함.
- 항송 스크랩의 경우에는, 원 방송사에서도 보유하고 있을 것인데왜 여기서 이렇게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것인지, 이렇게 보유해도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음.

〈위원장〉

시정 기록영상과 축제 기록영상은 비공개는 아니고, 부분공개인 것으로 기록원 안건이 상정되어 있음

〈위원〉

○ 만약 공개한다면 얼굴들은 다 블러 처리하는 것인지

〈간사〉

○ 어느정도선까지 공개가능한 것인지 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움. 만약 온라인 공개하는 상황이 된다면 재편집을 해서 잠깐 스쳐지나가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특정 개인이 너무 자세히 나오는 경우는 공개하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음.

〈위원장〉

○ 현재 기록원 의견은, 시정기록이나 축제기록영상은 그냥 공개하는 게 기본이지만, 개인의 모습이 상세하게 촬영됐거나 또는 공연영상 중에서도 일반 시민의 영상이 상세하게 촬영된 부분만 비공개 하겠다라는 의견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간사〉

○ 공연 영상의 경우는 개인이어서라기보다 행사 무대에서의 공연을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것이 가능한것인지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위원〉

○ 사실 아직 기록관리 쪽에서 제대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 같음. 근데 당초의 촬영 목적이 언젠가 공개할 의도까지는 담지 못했다고 생각함. 90년대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허락 같은 것들이 제도화되지 않기도 하였고. 홍보영상이라고 찍어둔 것들은 어쨌든 홍보나 공보의 목적으로 언젠가 나갈 것이라고 짐작 정도는 했을 것임. 하지만 시정기록영상 같은 것들은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딱히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남겨놔야겠다, 정도의 생각으로 만든 것으로 생각됨. 그런 관점에서, 홍보영상 같은 것들은 나가도 괜찮겠지만, 기록영상이나 뭐 축제기록영상, 그리고 음원 등이 포함된 자료들은 초반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음. 나중에 분명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위원〉

서울사진아카이브 등에 현재 갖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 중에 공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위원〉

○ 서울사진아카이브에 있는 영상은 일종의 컨텐츠로 만들어낸 영상이라서 해당사항이 없을 것임. 전체 약 40만건의 사진 중 현재 98,000건 가량이 서비스되고 있음. 2015년 당시에 생산된 지 30년이 경과 된 것들은 일단 공개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때도 법률적 검토 등을 받아서 공개를 했던 것임. 나머지 약 30만 건은 90년대 사진들인데 이제 순차적으로 공개하려고 함.

- 그런 방침이 기존에 있다면 30년 기준으로 공개 여부를 책정하기로 일단 가는 게 첫 번째 방식일 것 같음. 개인이 특정되거나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는 가능하면 부분공개 처리를 하는 식의 방식으로 써야 할 것임.
- 서울기록원이 모든 영상기록과 사진기록을 이관받아서 관리한다면, 내부적 관리지침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공개 여부는 계속 매번 이렇게 회의에 올라와서 검토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사업이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굉장히 많은 양인데 건건이 대응하기 너무 힘들 것임.

○ ○○○ 위원이 말씀하신 선별지침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개를 위한 것은 아닌 것이죠?

〈위원〉

○ 공개를 위한 선별이지만, 일단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들어올 때과정 자체가 중요함. 공개를 기준으로 만드는 방식인데 어디까지어떻게 공개할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5초간 노출되었을 경우는 공개하지 않고 1초만 공개한다. 이런 식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해져야 할 것임. 영상기록이므로 더욱 그러할 것임.

〈위원〉

막상 영상을 보니 참여자들의 얼굴을 다 가리면 자체 영상이 갖는 원래의 의미가 잘 보이지 않게되는 경우가 있긴 했음.

〈위원〉

○ KBS가 요즘 과거 영상을 공개할 때 많이 가리고 공개하는 것으로 보임. 법적 분쟁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고, 옛날TV 유튜브 아카이브에서도 최근 영상은 거의 안 올리고 있음. 드라마 영상은 90년대 후반까지도 올리더라도 일반 시민이 나온 영상은 대략 30년 이전까지만 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음. KBS 아카이브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위원〉

○ 서울시에서 제작한 영상 중에, 당시의 KBS 영상이나 대한뉴스 일부 장면과 시가 새롭게 찍은 장면을 합쳐서 다큐를 만든 게 있음. KBS 영상이나 뉴스 등을 가지고 2차 생산을 한 것이 되는데 이런 경우 타 방송 영상을 잘라내야 하는 것인지

〈위원〉

○ 제작 당시에 허락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써야 함. 어쩔 수 없음. 한 번이라도 허락이 들어갔으면 그거를 또 이차적으로 다시 가공하는 게 아니라면 비공개상태로 두든 공개상태로 두든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것임.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방송사 저작권보다 서울시나 관의 힘이 더 강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영상이므로 동의를 추정할 수 있을 것임. 언제까지 얼마나 공개할 수 있었던 동의가 있었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록원이 전부 공개를 해도 이길 것으로 보임. 미래의 공개까지도 감수하고 허락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런 부분까지 잘라서 공개한다면 전반적인 공개원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위원〉

이런 영상들을 어디에 공개하는 건지? 그냥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

〈위원〉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이나 유튜브 등에 공개하기 위해준비하는 것임

〈위원장〉

○ 중요한 문제로 보임. ○○○ 위원은 KBS 아카이브 등의 사례를

참고해서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 위원은 1차 자료가 생산될 때 공개 허락을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보임. ○○○ 위원은 공개지침이나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음.

〈위원〉

○ 모든 공공기관에서 디지털자료 공개 부분이 중요한 화두임. 특히 서울기록원 같은 곳에서는 한두 건이 아니고 아마 수십만 건을 다뤄야 하는 상황이므로, 오늘 심의회에서는 최대한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더라도 당장 내년이라도 이 지침을 완성해서 공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림. 공직자나 공무원 등 그 당시 관련자가 아닌 시민이 나온 영상의 경우에만 블러 처리하는 방식을 써야 될 것 같음.

〈위원장〉

○ 사전검토의견서를 다시 보면서 정리해보았으면 함

〈위원〉

○ 저는 사안별로 공개, 비공개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런 경우 부분공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위원과 ○○○ 위원은 부분공개라고 하셨음. 저는 사안에 따라서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원 의견은 부분공개인것인지.

〈간사〉

○ 다섯가지로 나누어서 안건을 작성하였음.

〈위원〉

○ 저는 비공개나 부분공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도 기록원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 위원님께서는 정리를 하자면 어떤 의견이신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음

말씀드린대로 기록원 의견에 대부분 동의함. 다만 이 회의에서 제가 계속 기타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선별 지침 같은 것을 회의록에 남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임.

〈위원장〉

○ 그러면 부분공개이고 기록원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이시고요. ○○○ 위원님도 마찬가지신지

〈위원〉

이 네. 다만, 공무원들의 모습이라든지 음성의 경우는 초상권 내지는 사생활 비밀과 거리가 멀다고 보아 공개하는 입장임.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임. 시정기록영상이라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은 개인이지만 그냥 공개해도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했고, 일반인들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비공개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같은 의견이신지.

〈위원〉

○ 네, 맞습니다.

〈위원〉

○ ○○○ 위원도 같은 의견이신지

〈위원〉

 대체로 동일한데, 시정기록과 축제기록 같은 경우 저는 일반 개인의 모습도 서울사진아카이브의 경우처럼 공개해도 된다는 입장이라 그부분은 조금 다름.

〈위원장〉

○ ○○○ 위원은 시정기록과 축제기록영상의 경우 개인이 포함된 영상도 전부 다 공개가능하다는 의견이신데 그러면 부분공개가 아니라 공개인 것인지.

〈위원〉

네. 시정, 축제기록과 홍보기록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보임.

〈위원〉

○ ○○○ 위원 말씀 듣고 보니, 이런 것들을 꼭 비공개를 해야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음. 사실 저도 같은 의견이지만 혹시 초상권이나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아직은 좀 민감할 수 있다 싶어서 개인의 모습이 촬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의견을 드렸던 것인데, 의견 일부 변경 가능함.

〈위원〉

일일이 모자이크 처리같은 걸 해서 공개를 할 만한 행정역량이 가능한지

〈위원〉

○ KBS 아카이브는 다 그렇게 하신다고 ○○○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 거기는 공개하고 싶은 영상 몇 개 골라서 홍보용으로 올리는 것이지만, 기록원은 전체적으로 다 공개를 할 것이냐 공개를 하지 않을 것이냐를 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음. 그렇다면, 만약에 저희가 현재 기록원에서 하신대로 결론을 내면 지금 기록원 내부에 담당자분들이 영상 내의 사인들에 대해 일일이 모자이크를 한다는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듬. 그렇다면 사실상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임. 작업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 결국 비공개인 것이므로.
- 결국 아무것도 못 내보내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저는 그게

아쉬운 상황일 거라고 보임. 앞으로는 영상이 더 중요한 기록물이 될 것 같은데, KBS는 몇 개 골라서 빨리빨리 편집해 올리는게 가능할지 몰라도, 서울의 많은 영상들이 기록원으로 막 쏟아져오는 상황이 된다면, 여기서 세부적으로 좋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개월, 1년, 2년, 3년씩 걸리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임.

〈위원〉

○ KBS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료의 공개,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아카이브는 아니고, 서울기록원은 최종 서비스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기관이긴 함. 하지만, 공개결정이 났더라도 장면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업로드하는 일들은 불가능에 가까움. 공개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겠지만, 공개가능한 몇 분 컷을 먼저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열람을 할 수 있게 한다던가 하는 식의 공개조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원〉

○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현실을 반영해서 축제 기록영상과 시정 기록영상같은 경우 전부공개를 하거나 전부 비공개를 결정하는 게 맞고, 아까 개별 사안에 대응하자는 말씀도 사실은 전부 비공개된 상태에서 별개 청구가 들어 왔을 경우에 사생활 노출될 수 있는 얼굴을 일부 모자이크 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임. 제 개인의 의견은 시정, 축제 기록영상 전부공개이지만, 만약 시정, 축제영상을 현재 기록원에서 검토하신 것대로 하면 그거는 사실상 비공개 상태로 상당부분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등

〈위원〉

○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 위원님이 공개지침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음.

○ 사실 반대의 문제도 생길 수 있음. 공개가 되었을 경우 소송을 계속 당하거나 해서 행정적으로 공개가 점점 위축되는 경우도 반대로 생길 수 있는 부분임. 그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지침을 말씀드리는 것임. 사실 오늘 공개결정한다고 해도 공개를 바로 할 수가 없음. 나가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야하는데 그런 실질적인 시스템적인 부분도 현재 부재하기 때문임. 현실적으로는 공개상태에 두고 순차적으로 공개가 되게 하는 방식, 그리고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검토해서 공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공개 처리가 되어있어야 가능할 것임. 비공개처리가 되어 있으면 아예 다시 검토하고 넘어가는 문제가생기기 때문에 공개로 놓고 행정력이 가능한 부분에서 하나씩 올리고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다시 또 대응하는 방식으로 하시는게 차라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듬.

〈위원장〉

○ 시정기록과 축제기록 영상도 ○○○ 위원 의견과 같은 것인지

〈위원〉

 아님. 부분공개 상태로 두면 일단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니, 그때 공개 청구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여 마킹해서 나가는 방식이 맞다고 봄.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으면 아예 오픈이 안 되는 상황이므로.

〈위원〉

○ 실무에서 지금 처리하시려면 일단 목록상으로는 공개든 부분공개든이라고 표시해놓고 그다음 실제로 어떤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이 의견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그런 상황이라면 전면 비공개 결정보다 지금 형태로 결정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겠음.

○ 네. 지금은 부분공개로 결정하고 나중에 하는게 좋겠음

〈위원〉

○ 일반 시민들이 공개상태로 목록에 있다고 해서 바로 그 목록을 클릭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잖아요?

〈위원〉

○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고, 앞으로 지침을 만들어 대비해 나가는게 어떨까 함.

〈위원〉

○ 저는 공개나 부분공개로 처리하되, 보여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KBS등의 사례나 명확한 선별 지침을 마련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음. 기록 자체에 대해 공개나 비공개로 막아놓고 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임. KBS나 다른 방송사의 노출 방식이나 규칙, 기준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임.

〈위원장〉

○ 이번 안건을 보류로 두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토론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기록원의 의견대로 공개와 부분공개 그대로 가결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결을 해보도록 하겠음.

〈위원〉

- 저희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남겨놓고 가결 처리하면 될 것임
- 나름의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구분의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음. 가결하시면 될 것 같음.

〈위원장〉

○ 그러면 가결하도록 하겠음. ○○○ 위원, ○○○ 위원의 의견을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내부에서 토론을 활발하게 해주셔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가결하겠음. 동의하시는지. (일동 동의)

○ 의결서 작성바람

〈위원〉

 축제기록이 서울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위원회 같은 기구에서 만드는 거 아닌지 궁금함. 그래서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기록이 아닌가 생각했음.

〈위원〉

○ 기본적으로는 주관부서에서 획득해서 저희한테 이관하는 방식임.

〈위원〉

 자체제작이 아니더라도, 보통 영상 외주의 경우에도 발주처 쪽에 저작권이 오는 걸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혹시라도 저작권을 외주 쪽에 주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임.

〈위원〉

○ 업체라기보다 축제를 위한 임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가 이런 집행을 하는 것 아닌지.

〈위원〉

○ 한시기구 같은 것일텐데 한시기구가 종료되면 거기에서 나왔던 기록은 모두 주관부서로 이관하도록 처리됨. 작년에 있었던 5.18 관련 40주년 기념위원회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거기에서 만들어졌던 영상, 저작물 등의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주관했던 부서에 기록으로 획득되어 기록원으로 일부 공유되거나 이관되고 있음.

〈위원〉

문화재단에서 만들었던 영상 같은 것도 다 이관받게 되는 것인지.

○ 문화재단은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인데,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자체 보관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활용하게 됨. 기록원에서 이관대상을 지정해서 가져올 수는 있지만 아직 지정한 사례는 없음. 문화재단의 경우 특수법인이므로 일단은 그 목적성에 맞게 그 기관에서 관리할 것이고, 일부는 공유될 수 있을 것임.

〈위원장〉

○ 의결서 작성안을 읽어주시기 바람

〈간사〉

- 감사기록 관련
 - 개인의 인적사항과 진술서,경위서,확인서 등의 자료, 징계관련 서류 중 비위의 상세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그밖의 내용은 공개로 하며, 비공개 사유는 6호(개인정보) 적용

○ 영상기록 관련

- 홍보영상은 공개. 방송스크랩은 비공개
- 시정 기록영상과 방송 홍보영상의 제작과정 영상, 축제기록 영상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3호에 의해 부분공개. 비공개 대상정보는 사인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나 공연영상 부분
- 그밖에 영상자료 선별 및 공개, 서비스 관련 정책과 지침 마련할 필요
- 시정,축제 등의 기록영상의 경우는 홍보영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기타 의견

〈위원장〉

○ 공연 영상 같은 경우, 공연 영상 다가 아니라 개인의 모습이 상세히 촬영된 부분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간사〉

이것은 개인이라서기보다 저작권과 관련되어서 넣은 부분임.축제 기록영상 전체 분량 중, 가수가 공연을 하는 장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한다는 내용임.

〈위원〉

 가수나 공연 저작자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이 상황에서만 공연하고 나중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걸 명확하게 지금처럼 인지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연을 한다는 것은 매체에 노출될 거라고 인지는 한 것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니었는지.

〈간사〉

○ 분량이 짧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공연 전체가 공개되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음

〈위원장〉

이 부분에 의견을 주셨으면 함. 공연 영상 전체를 비공개하는 건지 아니면 공연 영상 중에서도 일반 시민이 식별되는 경우에만 비공개하는 것인지.

〈위원〉

○ 가수 등 공연이 업인 사람들은 공개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고 비공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음.

〈간사〉

○ 방문 열람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위원〉

그런 종류의 컨텐츠는 유튜브에서 먼저 감지해서 알려주고 임시로 접근이 막히게 됨.

〈위원〉

○ 아예 업로드가 안됨

축제같은 경우는 공연의 비중이 절반 이상일텐데 그걸 들어낸다면.. 시민들과 축제의 가치를 잘 보여주기 위해 영상 재가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기는 함.

〈위원장〉

 그러면 이 상태로 가결을 하도록 하고, 기타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정책 준비하시고 다음 번에 결과를 알려주시는거로 하면 될지 (일동 동의)

일련번호	심의안건	검토의견	의결내용
2021-4-1	감사 기록의 공개범위	○ 부분공개 - 비공개대상정보: 개인의 인적사항, 진술 서/경위서/확인서, 징계서류 중 비위 상세내용 - 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가결
2021-4-2	영상 기록의 공개범위	 ○ 홍보영상: 공개 ○ 방송 스크랩: 비공개 ○ 시정 기록영상, (방송,홍보) 제작과정영상, 축제 기록영상: 부분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사인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연 영상 - 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3호 ○ 기타 의견 - 영상자료 선별 및 공개,서비스 관련 정책 및 지침 마련 필요 - 시정,축제 등 기록영상의 경우 홍보영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 	가결

- 의결서 내용에 모두 동의하시는지 (일동 동의)
- 온라인 회의이니 회의후에 메일을 통해 의결서에 서명을 받도록 하겠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
- 이상으로 2021년 4차 기록물공개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음. 끝.